

#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

##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난민인권센터,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예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단법인 희망날개,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원곡법률사무소, 이주여성인권포럼, 입양공공성강화와진실규명을위한연대회의, 입양인 국제네트워크(lbyangIN international Network), 자립팜 이상한나라,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 목차

1. 총론	3p
2.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5p
모든 아동에게 출생 즉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	5p
더 이상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하고 유기적인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6p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아동 청소년의 탈시설 로드맵 마련	7p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아동 중심의 입양 법제도와 아동보호체계 구현	8p
3.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사회적 권리와 자유	10p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치참여의 연령제한 삭제	10p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11p
아동·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문화에 대한 권리 보장	12p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13p
우범소년 규정 폐지 및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사법제도 구축	14p
디지털시대의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15p
4. 모든 아동을 위한 차별없는 정책	18p
비차별 원칙 실현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18p
차별과 혐오로부터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보호	21p
장애아동의 교육권, 놀 권리, 지역사회 돌봄과 가정 내 양육 지원	22p
수용자 자녀 실태 파악 및 아동복지지원 체계 내에서 돌봄	24p
장기 거주 이주아동의 체류권과 이주아동의 돌봄에 대한 권리 보장	24p

# 1. 총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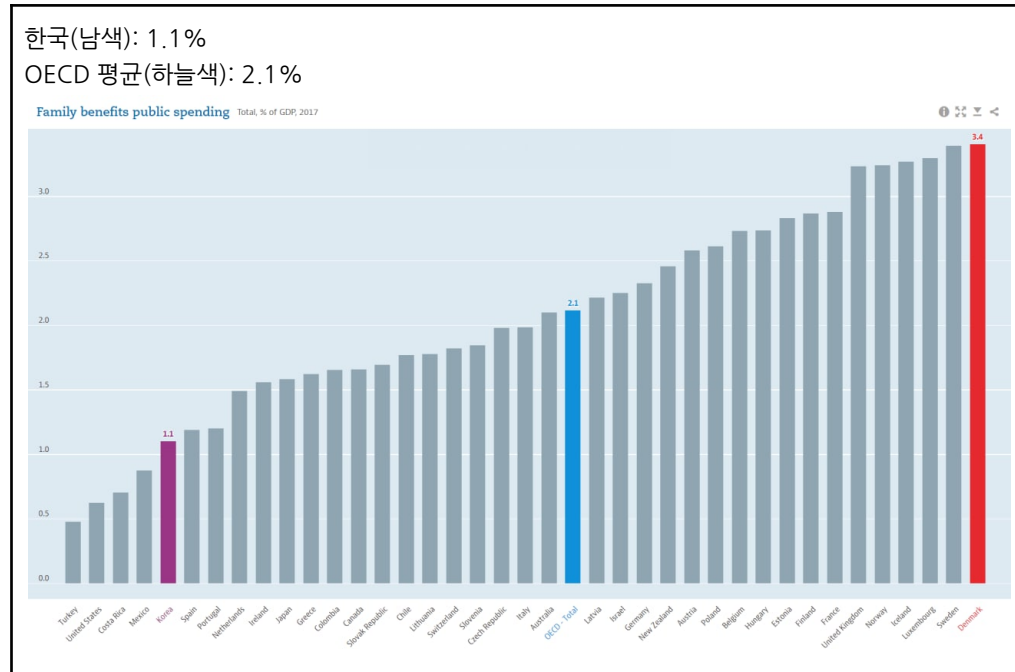
2022년 대통령 선거, 우리는 아동권리 주류화, 아동권리 보장 전면화를 실현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 아동 권리를 아동 정책의 중심에 두라

- 당연하다. 아동 정책에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지금까지의 아동정책은 아동의 현재적 권리보다도 가족, 경제, 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은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되어왔다. 아동 돌봄과 교육제도를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맥락에서 재구조화하라.
- 아동기본법(어린이·청소년인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등)을 제정하라. 아동기본법에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라.

## ■ 아동청소년 예산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증액하라

-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할 정당한 비용이다.
- 아동청소년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점진적 증액이라는 수사는 현재의 절박한 아동 권리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답이 아니다.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수사는 지금까지 외면되어온 아동 권리의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라.
-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예산을 OECD 평균에 맞도록 교육, 돌봄, 건강, 놀이/역량, 참여, 보호, 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있게 편성하라.
- 관련자료



## ■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의 분절성과 파편성을 이제 그만 끝내자.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동지원체계와 청소년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부처간 업무조정, 별도의 독립 기구 설치, 상시적 정책 협력 및 조정 기능의 실질화 등 다양한 경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라.
-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아동 권리 보장의 최전선에 있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라. 임신, 출산, 낙태, 양육, 입양, 비혼부모 지원을 포괄하는 공적 통합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2.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 ● 모든 아동에게 출생 즉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

- 출생 즉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개정
- 부모의 국적,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 밖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불수리되거나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인천 8세 출생미등록 아동 살해 사건, 여수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된 2세 영아 사건 등)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결정)
- 2019. 9. 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함
- 아동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및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익명출산제의 추진을 중단할 것.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익명의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출산제 도입 가능성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함

## ● 더 이상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하고 유기적인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확보
-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
-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개입 강화
-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공공화

-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다수 발생(2020년 10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2020년 6월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9년 인천 목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 주요 아동학대사망사건(2018~2020)

연번	시기	지역	주요내용	비고
1	'18.10	서울	시설 위탁모(베이비시터)가 아동(생후 15개월)을 학대 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여 사망한 사건	위탁모에 의한 학대
2	'19.1	의정부	친모가 아동(만3세)을 때리고,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4시간 가랑 가둬 사망한 사건	학대신고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이력 존재
3	'19.4	광주	계부가 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 *친부의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계부와 생활하게 된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친부와 분리
4	'19.9	인천	계부의 학대로 인해 아동(만5세)이 아동복지 시설에 보호되다가, 가정 복귀 1개월 만에 계부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아보전, 경찰 개입사례

5	'20.1	여주	계모가 9세 아동을 찬물 욕조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	아보전 사례	개입
6	'20.6	천안	여행용 가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한 사건('천안 사건')	아보전, 개입사례	경찰
7	'20.10	서울	16개월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 사망한 사건('양천사건')	아보전, 개입 사례	경찰

- 아동학대 사망사건 건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으로 파악 되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아동 사망 사건 다수 존재하여 정확한 공적 통계 미비한 실정
-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사망조사파트너'제도, 미국 각 주의 아동사망검토위원회 및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학대사망근절위원회'

## ●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아동 청소년의 탈시설 로드맵 마련

- 아동 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아동 청소년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마련
- 전국 240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 도입, 부처간 또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간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설 조사 시스템 도입
- 전국의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치

- 2018년 기준, 전체 보호아동 중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이 11,665명, 아동일시보호시설에 279명, 아동보호치료시설에 497명, 공동생활가정에 2,811명, 자립지원시설에 221명으로,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보호가 75%, 상대적으로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공동생활 보호가 18%에 불과=>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 이러한 아동보호 실태는 유엔의 인권 규범에 반함: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제123조 "시설양육을 제공하는 시설은 소규모여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가정에 가까운 환경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019. 9. 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최종 권고

## ●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아동 중심의 입양 법제도와 아동보호체계 구현

-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모든 아동을 원가정 또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확충
- 과거 해외입양에 대한 공적인 진상조사의 실시 및 권고 도출
-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 및 실효성 있는 뿌리찾기 지원
- 귀환한 해외 입양인의 권리 회복 및 재정착 지원
- 아동 중심의 국내입양 시스템 구현: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 예비 양부모 교육, 결연, 입양 전 보호, 입양허가, 사후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 법제도 정비

### - 입양통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057	880	863	681	704	492
국내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국외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 입양아동의 발생은 국내외 입양 모두 미혼모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2020년 기준, 국외입양의 99.6%, 국내입양의 83.1%) 국내입양의 경우 유기아동 14.6%, 가족해체 등 2.3%



- 미국으로 아동입양한 국가 통계: 1위 중국(1,475명), 2위 인도(302명), 3위 우크라이나(258명), 4위 콜롬비아(229명), 5위 한국(196명) <'18, 미 국무부>
- 해외 입양아동 16만 5305명(1953년~2017년) 중 국적 미취득자는 2만 6822명(미국 1만 9429명) 추정 <보건복지부>
- 2021. 2. 네덜란드의 '국가간 입양 조사 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국가간 입양에서 불법성 및 인권 침해 확인, 국가간 입양 중단 권고, 정체성 및 친생가족 찾기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권고)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 국제입양 전면 중단 선언하고 입양인과 부모에게 공식 사과

### 3.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사회적 권리와 자유

####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치참여의 연령제한 삭제

- 선거권 연령을 추가로 16세까지 하향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개정
- 현재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6세에 일치시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개정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삭제

-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제인권규범이 천명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아동권리협약은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 및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 이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주권자가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권과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피선거권은 국민주권 실현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함. 권리행사를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아동기의 특성(evolving capacity)을 고려한다면, 선거제도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함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가 구성원의 모든 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에 연결되기 마련이므로, 그 정도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고 확인함(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참조). 정당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체로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수단임. 정당정치와 함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시민적·정치적 자유로서 가능한 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 정치적 판단능력의 적절성은 참여의 요건이 될 수 없음

- 최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최소한 16세로 하향할 필요를 제시하는 영국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의 캠페인과 함께 정당가입 및 활동에 제한 연령을 두지 않는 스웨덴에서 19세의 국회의원이 선출된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

## ●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의 조속한 제정
- 통합교육 실질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확충
- 교육의 목표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정치참여교육, 노동교육, 성인지교육) 실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폐지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환경의 차별이 금지되는 법·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은 대학입시와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둔 채 학생 개인의 발달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함. 그간 전국의 5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학생인권의 해석과 실천에 지역격차가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한계도 있음
-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35개국 중 31위로, 과도한 학습부담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환경 속에 낮은 행복지수를 보였음(세이브더칠드런(2021),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특히 장애아동은 가족의 만족도, 생활의 만족도, 의견 존중과 시간 자율성, 학교 만족도 모두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음. 2013년 대비 학업중단 의사를 가진 청소년이 증가했으며(2013년 0.6%, 2018년 1.3%), 빈곤아동,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결과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함(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함. 교육은 아동의 내재된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또한,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지도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교육의 모든 방식과 내용은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유념할 때, 비차별과 포용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형성은 매우 중요함. 경쟁이 아닌 학생의 고유한 삶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도이며, 어떠한 구성원도 놓치지 않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시민성의 핵심이 특정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인 것처럼 민주사회의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비민주적 풍토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정치참여교육과 노동교육은 학업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터부시되며,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시각이 지적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도 2015년 이후 적절한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학습하는 교육의 목표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

## ● 아동·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문화에 대한 권리 보장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연령별 발달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놀이·여가 환경 조성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놀이·여가 환경 구축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 자원 투입
-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및 학교공간 개선
- 아동보호에 있어 기업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제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령별 놀이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상황 속 각종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되며, 아동의 놀이·여가, 휴식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위축된 현실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특성화계고보다 일반계고 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39.8%는 학업부담과 성적 등 학업문제를 이유로 응답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25.5%)으로 높았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 과도한 경쟁적 교육환경이 학업 스트레스, 수면·운동·여가 활동시간 부족, 또래관계 결핍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아동기를 박탈하는 문제”로 나타남(스스로지킴이(2019), 제5·6차 아동보고서)

- 또한,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은 여가활동의 상당시간을 인터넷 검색과 게임, TV 및 DVD 시청 등으로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비함. 디지털을 매개하는 여가·문화생활이 늘어나면서 신체활동 정도가 낮아지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모형을 확산할 필요도 있음
- 한편, 노키즈존, 노틴에이지존으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시민사회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임. 국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활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하길 장려할 책무가 있음(CRC/C/GC/17, para. 38)

●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는 ‘성착취’임을 명시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개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관계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교육·훈련 의무화
- 성착취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환경 구축

-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들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착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 유형은 모두 성착취로 이해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성착취물 등으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분절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성매매의 경우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며 이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도 남아있음

- 나날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신종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범죄의 특성도 인식해야 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주안점을 ‘착취 행위자’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법제에 분명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우범소년 규정 폐지 및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사법제도 구축

- 우범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삭제
- 소년에 대한 필수적 국선보조와 비구금적 처우 우선
- 사회 내 처분 다양화를 통해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목표를 둔 실질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소년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과밀화 문제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포함한 환경 개선

- 우범소년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예방을 명목으로 처벌적 성격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가출, 성매매, 탈가정 상황 등은 빈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동보호에 필요한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임. 국제인권규범은 지위비행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 무엇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적용할 것을 명시함(제37조(a)). 적절한 법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장애아동과 이주아동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서 구금적 처우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음. 사법적 개입이 고려되는 최초의 순간부터 법률조력이 제공되고, 모든 단계에서 다이버전의 가능성이 적극 고려되며, 아동·청소년이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함. 이는 곧 당사자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방안임
- 부득이하게 구금적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이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적절한 방식의 지도와 처우방식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부산소년원의 위탁소년 과밀 실태와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을 넘는 소년원이 전체 소년원의 70% 이상이었다는 조사 결과(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2020)는 소년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재정적 자원 확보가 필요한 현실을 보여줌. 소년보호시설 내 폭력과 부당한 처우, 독방(징벌방) 구금, 장애·이주·성소수자 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년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도 거듭 문제되고 있음

## ● 디지털시대의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특별히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법제 구축
-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있어 아동친화적 개인정보처리 절차 도입 의무화
- 영리 목적의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 활용 금지
-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관리앱의 사용 금지
-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의사결정의 원칙적 금지
-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도입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2021)을 통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동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안전장치의 마련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음.
- 디지털 시대에 특히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기업 등이 인터넷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 등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제는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아동의 프라이버시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연령별 사전동의 절차 구축, 쉬운 방식의 권리행사 방법 안내 등 아동친화적 개인정보처리 절차 도입 등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전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 아동친화적 절차를 도입할 것으로 의무로 하는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기업 등이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9. 10. 24.)에서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공개, 소지품검사, 복장제한 등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친화적 절차를 개발·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한편 아동의 문자 대화 내역, 검색기록,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부모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관리 앱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지적하듯 위와 같은 관리 앱은 보호를 명목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관리 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아동의 법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프로파일링을 통한 아동의 성향 분석은 아동의 무리한 금전 지출 등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 관련하여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권,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보고서(2021. 7. 25.)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개발과 디지털 성착취 근절, 언론 등으로부터 아동의 사생활 보호, 아동에 대한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금지,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한 법제 개선 등을 권고하였음

- 한편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특히 대부분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부당히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함

## 4. 모든 아동을 위한 차별없는 정책

### ● 비차별 원칙 실현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교육,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차별없는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유, 영역 및 차별의 예방/구제/시정 절차를 명문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에서 분리·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고(노키즈존의 사례),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과 복장 등의 자기 표현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시 등에서 차별을 받기도 함. 또한 국적·민족·인종에 따라 학습권과 체류권을 침해받는 아동을 비롯하여 장애아동, 성소수자 아동 등 대한민국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수 많은 아동에 대한 제도적·정책적·문화적 차별이 만연하지만 이를 시정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었음. 국내 인권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 역시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para 17., CRC/C/KOR/CO/5-6)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함
-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2000년 전후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며 더 많은 차별 사유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인권법, 평등법, 동등대우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재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0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건을 비롯하여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국회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 4건이 계류 중임. 2007년 대한민국 국회에 최초 발의 된 이래 14년간 제정되지 못한 이 법률안은 모든 아동,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차별없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관련 자료

<p><b>1. 대한민국 헌법</b></p> <p>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b>2. 대표적인 외국 입법례</b></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정시기</th> <th>법률명</th> <th>차별금지사유</th> </tr> </thead> <tbody> <tr> <td>1977</td> <td>캐나다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77)</td> <td>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나 표현, 혼인상황, 가족상황, 유전적 특성, 장애, 사면되거나 기록정지가 명령된 전과</td> </tr> <tr> <td>1993</td> <td>뉴질랜드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3)</td> <td>성별, 혼인상황, 종교적 믿음, 윤리적 믿음,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 장애, 연령, 정치적 의견, 고용상황, 가족상황, 성적지향</td> </tr> <tr> <td>2004</td> <td>아일랜드 평등법 (the Equality Act 2004)</td> <td>성별(gender), 혼인상황, 가족상황, 성적지향, 종교, 연령, 장애, 인종, 유랑공동체소속</td> </tr> <tr> <td>2006</td> <td>독일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td> <td>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td> </tr> <tr> <td>2008</td> <td>스웨덴 차별방지법</td> <td>성별, 트랜스젠더 및 성별정체성의 표현, 민족, 인종, 종교 및 신념, 장애, 성적 지향, 연령</td> </tr> <tr> <td>2010</td> <td>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td> <td>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시민결합,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 기존 7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법)</td> </tr> </tbody> </table>			제정시기	법률명	차별금지사유	1977	캐나다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77)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나 표현, 혼인상황, 가족상황, 유전적 특성, 장애, 사면되거나 기록정지가 명령된 전과	1993	뉴질랜드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3)	성별, 혼인상황, 종교적 믿음, 윤리적 믿음,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 장애, 연령, 정치적 의견, 고용상황, 가족상황, 성적지향	2004	아일랜드 평등법 (the Equality Act 2004)	성별(gender), 혼인상황, 가족상황, 성적지향, 종교, 연령, 장애, 인종, 유랑공동체소속	2006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2008	스웨덴 차별방지법	성별, 트랜스젠더 및 성별정체성의 표현, 민족, 인종, 종교 및 신념, 장애, 성적 지향, 연령	2010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시민결합,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 기존 7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법)
제정시기	법률명	차별금지사유																					
1977	캐나다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77)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나 표현, 혼인상황, 가족상황, 유전적 특성, 장애, 사면되거나 기록정지가 명령된 전과																					
1993	뉴질랜드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3)	성별, 혼인상황, 종교적 믿음, 윤리적 믿음,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 장애, 연령, 정치적 의견, 고용상황, 가족상황, 성적지향																					
2004	아일랜드 평등법 (the Equality Act 2004)	성별(gender), 혼인상황, 가족상황, 성적지향, 종교, 연령, 장애, 인종, 유랑공동체소속																					
2006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2008	스웨덴 차별방지법	성별, 트랜스젠더 및 성별정체성의 표현, 민족, 인종, 종교 및 신념, 장애, 성적 지향, 연령																					
2010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시민결합,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 기존 7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법)																					
<p><b>3. 국제인권기구의 권고</b></p> <p>○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p>																							

##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 ○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 ● 차별과 혐오로부터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보호

- 청소년기본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명시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지원' 명시, 청소년 인구집단 실태조사 시 성소수자 청소년 항목 삽입
-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소수자인권교육 의무화
- 성별구분 설치 원칙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배제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성소수자 친화적인 청소년복지시설 환경 구축
- 초중등교육법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설
-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생활실태 파악,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지침 및 예산 마련

- 청소년 성소수자는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갈등을 겪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가정밖으로 밀려나기 쉬우며, 해외에서는 탈가정 청소년의 20-40%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실태조사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2020년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탈가정 경험 실태조사 결과,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청소년 쉼터 이용률은 33.9%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성별구분적 쉼터 설치규정 등 성소수자 차별적인 제도와 청소년 지원자들에 대한 성소수자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결과임. 탈가정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47.4%는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없거나 입소가 불가능해서' 쉼터에 가지 못했다고 답함.
- 이렇듯 현재의 청소년 복지제도는 홈리스 상태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전혀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24시간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에 머물거나 노숙을 하는 현실에 놓여있음.('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2021. 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 10.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직무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para 42., CRC/C/KOR/CO/5-6).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배제시키고, 전환치료를 권고하는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에 예산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들(휴먼라이츠워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2021. 10.).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 4.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호를 최초로 명시함. 해당 계획의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하의 ‘차별, 혐오 없는 학교’ 부분에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김.
- 한편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호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차별없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함.

## ● 장애아동의 교육권, 놀 권리, 지역사회 돌봄과 가정 내 양육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아동에게 아동보호체계와 아동학대대응체계, 지역사회복지,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등에서 차별없이 권리 보장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청에서 지원

-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함. 아동으로서도 장애인으로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과 장애인 사이에서 오히려 보호받을 권리의 공백을 경험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으로서 권리보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됨
- 아동의 교육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를 권고함(para 36., CRC/C/KOR/CO/5-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는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교육청 지원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안내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을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은 아동과 비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적절하지 않고, 시설거주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정부의 탈시설화 방침에도 부합함
- 아동의 돌봄받을 권리: 현행 아동분야 사업안내는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하고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사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아동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집중된 대안양육을 제공하기 어려움.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장애아동은 아동학대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대응체계 사이에서 협력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역할분담과 제정적 인적 지원이 필요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원가정 기능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바탕으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시설화를 예방하고 원가정에서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야 함
- 아동의 놀 권리: 장애아동이 처음으로 차별을 마주하는 공간은 놀이터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그네, 시소 등이 제작되어도 놀이터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하여 설치될 수 밖에 없음. 분리된 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의 발달 시기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 사이의 차별과 분리를 가르치게 됨

## ● 수용자 자녀 실태 파악 및 아동복지지원 체계 내에서 돌봄

○ 수용자 자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수감, 사회복귀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복지지원 체계에서 보호

○ 수용자 자녀 보호 3법 제정

- 수용자의 자녀는 부모를 알고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UN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동협약 제9조 제1항),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동협약 제9조 제3항),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동협약 제9조 제4항)를 침해받음. 더불어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됨(「아동복지법」 제3조 제5항)
- 2020년부터 보호대상아동 중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를 파악하기 시작하여 166명의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2018년 법무부가 조사한 성인 보호자 없이 생활한다고 답한 1,209명과 크게 차이가 남
- 2020. 12. 한정애의원은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계류 중임

## ● 장기 거주 이주아동의 체류권과 이주아동의 돌봄에 대한 권리 보장

○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이주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

○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의 입국 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 지원 및 취업 지원방안 마련

○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해 안정적인 장기 체류자격 부여, 기초생활수급 등 아동기 안정적 생활 보장

○ 외국인 미혼모 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등을 고려하여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을 권고함(CRC/C/KOR/CO/5-6).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19진정0703100)에서 법무부장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함.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에는 아동의 권리 또는 이주아동의 체류에 대해 다룬 별도의 규정이 없음.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아동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임.

- 법무부는 2010년부터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내부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미취학 연령의 아동 및 학교 밖 아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임.
- 법무부가 2021. 발표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은 대상을 1) 국내에서 출생하여 2)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3)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음.

- 이주아동은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26~50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함. 난민인정자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논의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결단이 없으면 지역별, 체류자격별로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보육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아동 발달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침
- 국제 이동이 증가하면서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은 이미 국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이들이 겪는 국적, 언어, 문화,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한 차별이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음. 이들이 입국한 후 본인의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년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기도 함. 또한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로서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므로,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살거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을 하여 유학(D-2)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함.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본인의 계획과 의사에 따른 진학거부나 포기, 취업은 할 수 없음

- 학대피해 이주배경 아동은 피해구제기간동안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구제 기간 이후의 연장은 재량이므로 학대행위자와 함께 출국할 위험이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국적을 구분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분리된 이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 이주배경 아동을 보호하더라도 이주배경 아동은 시설에서 수급을 받을 수 없어 시설이 자부담으로 아동을 보호하게 됨.
-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아 체류자격이 불안정함. 또한 취업활동허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혼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공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침

##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

발행일 2021. 12. 23.(목)

발행처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난민인권센터,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예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단법인 희망날개,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원곡법률사무소, 이주여성인권포럼, 입양공공성강화와진실규명을위한연대회의, 입양인 국제네트워크(lbyangIN international Network), 자립팜 이상한나라,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담당 장길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femigilwoan@minbyun.or.kr](mailto:femigilwoan@minbyun.or.kr), 02-522-7284)

※ 본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